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하고, 평창군 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, 관내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인용 법령명 현행화: 안 제3조의2제3항

1) (기존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→ (개정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단체 경비지원 사항 수정 및 추가: 안 제6조제6호 및 제9호

1) (기존) 체육대회, 수련대회, 단합대회 등 문화·체육행사 지원

→ (변경) 도·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, 수련대회, 단합대회 등 문화
·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

2) (추가)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5. 5. 14. ~ 25. 6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5-774호, 행정담당관-11934(2025. 5. 13.)호

2) 규제심사 :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7702(2025. 5. 21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예산과-7702(2025. 5. 21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8410(2025. 5. 14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8777(2025. 6. 11.)호]

6) 조례규칙심의 : 원안의결 [기획예산과-9422(2025. 6. 23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의2제3항 중 “「개인정보보호법」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”로 한다.
제6조제6호 중 “체육대회”를 “도·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”로, “지원”을
“개최 및 참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
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의2(비밀유지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(「<u>개인정보보호법</u>」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“개인정보”를 말함)를 포함한다.</p> <p>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체육대회</u>, 수련대회, 단합대회 등 문화·체육행사 <u>지원</u></p> <p>7.·8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9. (생략)</p>	<p>제3조의2(비밀유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「<u>개인정보 보호법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도·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</u>----- ----- <u>개최</u> <u>및 참가</u></p> <p>7.·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</u> <u>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</u></p> <p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 [법률 제19951호]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35149호]

제81조(이장 및 통장의 임명)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,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·면장·동장이 임명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 제6조(임무수행 등 지원) 제9호
: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: 9,000원*26명*연 10회 = 2,340,000원
※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인원: 26명
- 평창 4/ 미탄 3/ 방림 3/ 대화 3/ 봉평 3/ 용평 3/ 진부 4/ 대관령 3
- 각 읍·면협의회별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참석 / 평창·진부: 부회장 2명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 시 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